

 <p>거창군 Geochang County</p> <p>공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p>	<h1 style="font-size: 4em; margin: 0;">공 보</h1> <p style="font-size: 1.5em; margin: 0;">제902호 2023. 3. 8.(수)</p>	
---	--	---

선 결	기관의 장
--------	-------

고 시

거창군 고시 제2023-33호 도로명주소 고시 2

공 고

거창군 공고 제2023-336호	보상계획공고	3
거창군 공고 제2023-382호	「거창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8
거창군 공고 제2023-387호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거창군 공고 제2023-388호	「거창군 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4
거창군 공고 제2023-400호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30
거창군 공고 제2023-401호	「거창군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40
거창군 공고 제2023-405호	「거창군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48
거창군 공고 제2023-411호	「거창군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54
거창군 공고 제2023-437호	거창군계획시설[공공청사,도로] 사업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 의견청취 공고	61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3-22호	「거창군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68

회 략								
------------	--	--	--	--	--	--	--	--

발 행 : 거창군 편 집 : 기획예산담당관 (☎055-940-3043)
 ※ 거창군 공보는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3. 8.

거창군수

○ 도로명주소 고시대상

- 건물번호 부여 :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청연길 48 등 5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 (변경·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이름,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고시내용과 기타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055-940-3314)로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보 상 계 획 공 고

가조면 마상리, 수월리에 시행 예정인 「가조 제일교회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열람 공고합니다.

2023. 3. 1.

거 창 군 수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가조 제일교회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나. 위 치 : 거창군 가조면 마상리, 수월리 일원

다. 사 업 량 : 도시계획도로 개설 L=400.0m, B=6.0~8.0m

2. 사업시행자 : 거창군수

3. 보상시기 : 별도 보상통보

4. 보상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산정하여 현금 지급한다.

(감정평가 업자선정 : 사업시행자가 2인 선정, 토지소유자 추천시 별도 1인 선정)

5. 보상절차

가) 토 지 : 보상협의 성립시 소유권 이전등기 관계서류 제출 후 보상

나) 지장물 : 철거후 보상금 전액 지급

6. 보상계획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7. 보상계획 열람장소 :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도시개발담당 (☎055-940-3593)

8. 이의신청 : 열람장소에서 서면 제출

【별첨 1-1】 토지조서(소로3-267호선)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편입	현실	공부	대장	편입 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계		15필지				17,221	1,041					
1	가조면 마상리	321-25	321-25	전	전	16	16	거창군 가조면 마상리 107	이동석			
2	가조면 마상리	459-7	459-7	대	대	134	134	거창군 가조면 마상리 419-3	가조 제일교회			
3	가조면 마상리	459-8	459-8	대	대	9	9	거창군 가조면 마상리 419-3	가조 제일교회			
4	가조면 마상리	460-6	460-6	대	대	58	58	거창군 가조면 마상리 419-3	가조 제일교회			
5	가조면 마상리	460-7	460-7	대	대	2	2	거창군 가조면 마상리 419-3	가조 제일교회			
6	가조면 마상리	465-11	465-11	과	과	306	306	대구 수성구 수성로 71, 101동 1303호 (동일하이빌레이크)	이영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장자골로 49	대한광통신 주식회사	근저당
7	가조면 마상리	465-8	465-8	과	과	180	40	대구 수성구 수성로 71, 101동 1303호 (동일하이빌레이크)	이영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장자골로 49	대한광통신 주식회사	근저당
8	가조면 마상리	2-21	2-21	과	과	705	57	대구 수성구 수성로 71, 101동 1303호 (동일하이빌레이크)	이영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장자골로 49	대한광통신 주식회사	근저당
9	가조면 수월리	491-1	491-1	과	과	2,846	34	대구 수성구 수성로 71, 101동 1303호 (동일하이빌레이크)	이영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장자골로 49	대한광통신 주식회사	근저당
10	가조면 수월리	493-2	493-2	전	전	324	72	경기도 의왕시 금천말안길 19-8, 203호 (이동)	권영진			
11	가조면 수월리	493-1	493-1	대	대	313	115	거창읍 거열로7길 29, 101동 702호 (대경빅스빌)	최용관	거창읍 강변로 8길 32-25	거창축산업 협동조합	근저당
12	가조면 수월리	492-1	492-1	전	전	840	138	거창읍 국농소2길 38-27	김귀순			
13	가조면 수월리	491-11	491-11	과	과	7	7	가조면 월포2길 3-8	김영석 정영순 (지분1/2)	거창군 가조면 장군봉1길 6-1	동거창농업 협동조합	근저당
14	가조면 수월리	491-4	491-4	도	도	76	17	거창군 가조면 마상리 3	이선철			
15	가조면 수월리	1376	1376	도	도	11,405	36		국토교통부			

【별첨 1-2】 토지조서(소로2-188호선)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편입	현실	공부	대장	편입 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계		12필지				12,815	1,346					
1	가조면 수월리	458-9	458-9	도	도	51	31		경상남도			
2	가조면 수월리	457-8	457-8	도	도	153	61		경상남도			
3	가조면 수월리	457-15	457-15	전	전	174	174	거창읍 강양4길 26, 101동 301호 (송림아파트)	백중섭	거창읍 수남로 2241	거창사과 원예농업 협동조합	근저당
4	가조면 수월리	458-16	458-16	전	전	110	110	거창읍 거열로8길 57, 103동 506호 (현대아파트)	이일선			
5	가조면 수월리	457-9	457-9	전	전	26	26	부산 금정구 금단로 168, 503호 (남산동, 콜트힐)	김재목 (지분1/3)	부산 서구 충무동 1가 7-5	주식회사 환영상호 신용금고	근저당
5-1	가조면 수월리	457-9	457-9	전	전	26	26	거창읍 강남로3길 14, 나동 201호 (송정문화빌라)	최영 (지분1/3)	부산 서구 충무동 1가 7-5	주식회사 환영상호 신용금고	근저당
5-2	가조면 수월리	457-9	457-9	전	전	26	26	거창군 가조면 가조가야로 1101-8	김영순 (지분1/3)			
6	가조면 수월리	458-14	458-14	전	전	316	316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26길 25 (아현동)	김경순			
7	가조면 수월리	458-17	458-17	전	전	74	74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26길 25 (아현동)	김경순			
8	가조면 수월리	460-8	460-8	과	과	159	159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26길 25 (아현동)	김경순			
9	가조면 수월리	458-19	458-19	대	대	111	111	거창군 가조면 월포2길 34	박진혁	거창읍 수남로 2241	거창사과 원예농업 협동조합	근저당
10	가조면 수월리	1376	1376	도	도	11,405	48		국립농업 과학기술부			
11	가조면 수월리	488-7	488-7	전	전	176	176		한국 농어촌공사			
12	가조면 수월리	488-9	488-9	전	전	8	8		한국 농어촌공사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거창군청에서 시행하는 『가조 제일교회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사업구역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에 대한 보상액 산정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합니다.

추천 감정평가업자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연락처

감정평가업자 추천 토지소유자

연번	성 명	주 소	면적(㎡)	날인(서명)
1				
2				
3				
4				
5				
6				
7				

2023. . .

거창군수 귀하

「거창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거창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거창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3월 2일
거창군수

1. 자치법규명

- 가. 「거창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나. 「거창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시행규칙」

2. 제정이유

- 가. 풍수해로 인한 주택 등의 침수 피해 방지시설 설치 지원근거 마련
- 나. 설치지원 근거 마련으로 침수방지시설 설치에 대한 참여 유도

3. 주요내용

가. 조 례

1) 대상 시설물 및 침수 방지시설(제2조)

가) 대상시설 :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

나) 방지시설 : 침수 피해 방지 물막이판 등의 시설

2)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제5조), 지원대상 및 적용범위(제6조), 지원기준(제7조), 사후관리(제8조) 등

나. 시행규칙

1) 지원기준(제2조) : 설치비용의 80% 이내 보조금 지원

가)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 개소 당 2백만원 이하

나) 공동주택 : 개소 당 1천만원 이하

4. 제정 조례안 및 시행규칙안 : 붙임2, 붙임3

5. 입법예고기간 : 2023. 3. 2. ~ 3. 2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3. 21.(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등

다.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하는 곳 : 거창군청 안전총괄과 자연재난담당

1) 주소 : (우 51032)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안전총괄과

2) 전화 055-940-3652, 팩스 055-940-3629, 이메일: kaomaru@korea.kr

7.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안전총괄과 자연재난담당(☎055-940-365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서식) 1부.

2. 「거창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1부.

3. 「거창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시행규칙」 제정안 1부.

4. 관계법령 1부. 끝.

[붙임1]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시행규칙안 내용)	의 건	비 고

[붙임2]

거창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 등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주택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또는 소규모 상가를 말한다.
 - 가. 주택 :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 나. 소규모 상가 :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소유 주택 등에 대한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군수의 행정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주택 등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침수방지시설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 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절차 및 지원 대상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및 적용범위) ① 군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 등의 출입구에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적용대상 시설의 설치규모는 침수피해를 예상하여 현장 여건에 맞게 적정한 규모로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지원 신청,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결정 등의 절차는 제5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제7조(지원범위)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부담률 및 지원액의 한도를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택 등에 설치된 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홍보 등) ① 군수는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 등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운영) 군수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수자원분야 또는 자연재해 전문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중복 지원 제한) 제6조에 따른 지원과 같은 종류의 지원을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이미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3]

거창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기준) ① 군수는 「거창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설치 개소 당 1천만원 이하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책무)

②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자연재해 경감 협의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등

2. 풍수해 예방 및 대비

가.삭제 <2017. 10. 24.>

나. 수방기준 제정·운영

다.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기준 제정·운영

라. 내풍(耐風)설계기준 제정·운영

마. 그 밖에 풍수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2월 28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2. 개정이유 : 행정조직 개편(2023.1.9.)으로 안전건설국이 신설됨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 분과위원회, 운영위원회, 지역회의의 구성과 운영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위원회 구성 <제9조>
 - 1)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 재기재 내용 삭제
 - 나. 분과위원회(안 제15조)
 - 1) 조례에 제한적으로 규정된 분과위원회 세부 구성과 운영 사항 정비
 - 2)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 사항을 위원회에서 의결
 - 다. 운영위원회(안 제16조)
 - 1) 운영위원회의 제한적 구성 규정 삭제
 - 2)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위원회 의결로 정함
 - 라.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운영(안 제18조)
 - 1) 읍면 지역회의 운영의 통일성을 기함
 - 2) 지역회의 운영의 일부 단서 규정 삭제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기획예산담당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055-940-3029), 이메일(hancholy@korea.kr)

라. 제출기한 : 2023. 3. 20.(월) 18:00까지 도달

마. 제출주소 : (우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기획예산담당관)

바. 문의전화 : 055-940-3052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2.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1부.

3. 관련법령 1부. 끝.

[붙임 1]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규 칙 명 :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의 건	비 고

[붙임 2]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성별(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다)”을 “성별”로 “건설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제2항(종전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삭제한다.

부칙(조례 제2634호 전부개정 2021. 4. 28.) 제3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지역별, <u>성별(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다)</u>, 연령별, 계층별로 균형있게 위촉한다. 다만, 기획예산담당관, 복지정책과장, 도시건축과장, <u>건설과장은 당연직</u>위원이 된다.</p> <p>1.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군내 기관 및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재정, 예산 등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p> <p>③·④ (생략)</p> <p>제15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p> <p>1. <u>기획보건사업소분과위원회</u>: 기획예산담당관, 보건소·사업소 소관업무 2. <u>행정복지분과위원회</u>: 행정복지국 소관업무 3. <u>경제산업분과위원회</u>: 경제산업국 소관업무 4. <u>농업분과위원회</u>: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p> <p>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전원으로 구성한다.</p>	<p>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지역별, <u>성별, 연령별, 계층별로 균형있게 위촉한다.</u> 다만, 기획예산담당관, 복지정책과장, <u>도시건축과장, 건설교통과장은 당연직</u>위원이 된다.</p> <p>1.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군내 기관 및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재정, 예산 등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p> <p>③·④ (현행과 같음)</p> <p>제15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둔다.</p> <p><삭 제></p> <p><삭 제></p>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간사 각 1명을 두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분과별 소관부서의 직제순 상위 부서 주무담당주사로 한다.

④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관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운영위원회) ①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운영방법 및 개선방안, 정책수립,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기획예산담당관, 각 분과위원장 4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운영)

① 제6조제2호에 따른 지역회의는 「거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②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제안사업의 내용과 우선순위
2.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창읍 지역회의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거창읍 지역회의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읍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위촉한다.

1. 주민예산학교 수료자
2. 예산 및 재정예 경험과 지식이 풍부

<삭 제>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운영위원회) ①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운영방법 및 개선방안, 정책수립,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삭 제>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운영)

① 제6조제2호에 따른 지역회의는 「거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②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제안사업의 내용과 우선순위
2.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사항

<삭 제>

<삭 제>

부한 사람

⑤ 거창읍 지역회의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회의 업무관련 담당주사로 한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된 사항 외에 거창읍 지역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거창군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조례 제2634호 전부개정 2021.4.28.)

제1조·제2조 (생략)

제3조(유효기간) 제1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2021년 12월 31일 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삭 제>

<삭 제>

부칙(조례 제2634호 전부개정 2021.4.28.)

제1조·제2조 (현행과 같음)

<삭 제>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이하 “주민참여예산기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⑤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거창군 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 조례」개정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2월 28일

거창군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 조례」

2.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거창군 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 존속기한 만료일 도래에 따라 존속기한 연장하여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소득수준 향상을 위해 저리로 농업경영자금 용자를 시행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안 제4조)

- 1) 현행: 2023년 12월 31일까지
- 2) 변경: 2028년 12월 31일까지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3년 3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 농업기술센터(농업축산과)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다.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하는 곳 :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 1) 주소 : (우 50147)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322,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 2) 전화 055-940-8125, 팩스 055-940-8119, 이메일: zxcv963258@korea.kr

7.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농정담당
(☎055-940-812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서식) 1부.
2. 「거창군 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관계법령 1부. 끝.

[붙임1]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 례 명 : 「거창군 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붙임2]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존속기한)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u>2023년 12월 31일</u> 까지로 한다.	제4조(존속기한)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u>2028년 12월 31일</u> 까지로 한다.

관련법령

□「지방재정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전문개정 2011. 8. 4.]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2. 개정 이유

- 거창군의 공공기관 등 기반시설 유치를 통해 군민의 공공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일부 조항을 신설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위한 대부료 감면율 및 조성원가 매각 재산 신설(안 제30조·제33조)

- 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위임에 따른 감면율 정함
- 2) 조성원가로 매각 할 수 있는 재산
 - 「거창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따른 공공기관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군수가 조성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4. 예고기간 : 2023. 3. 2.(목) ~ 3. 21.(화)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재무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등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 주소 : (우 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재무과)

- 전화번호 : 055) 940-3262 / FAX : 055) 940-3219

6.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재무과 재산관리담당【☎(055)940-326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 1부. 끝.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 명(단체명) :
- 생년월일(등록번호) :
- 주 소 :
- 연 락 처 :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입법예고내용	의 견	비 고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에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행정기관: 100분의 80
2. 그 밖의 공공기관: 100분의 50

제33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거창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따른 공공기관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군수가 조성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0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⑥ (생 략)</p> <p style="text-align: right;"><u><신 설></u></p>	<p>제30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⑥ (현행과 같음)</p> <p>⑦ 「<u>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u>」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에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중앙행정기관: 100분의 80 2. 그 밖의 공공기관: 100분의 50</p>
<p>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부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제33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 매입비(보상비를 포함한다)와 그 밖에 개발에 소요된 비용(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으로 한다.</p> <p>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군수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안의 공유재산과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군이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p> <p>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로 설립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p> <p>3. 군수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p>	<p>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부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제33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 매입비(보상비를 포함한다)와 그 밖에 개발에 소요된 비용(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으로 한다.</p> <p>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군수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안의 공유재산과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군이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p> <p>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로 설립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p> <p>3. 군수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p>

현 행	개 정 안
<p>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p> <p>4. 군수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공유재산</p> <p style="text-align: right;"><u><신 설></u></p>	<p>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p> <p>4. 군수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공유재산</p> <p>5. 「<u>거창군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u>」에 따른 공공기관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군수가 조성한 「<u>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u>」 제2조 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p>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0조(처분재산의 가격 결정) 일반재산을 처분할 때 그 가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7조(일반재산가격의 평정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각하거나 교환하는 경우의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가로 결정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가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나 분할측량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감정평가액은 평가일부터 1년 동안만 적용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을 교환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를 생략하고 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 재산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교환할 수 있다.

④ 재산가격이 1천만원(특별시, 광역시와 인구 50만 이상인 시의 경우에는 3천만원) 미만으로 추정되는 재산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의 가격은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없을 때에는 그 토지와 연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를 기준으로 할 수 있고, 건물의 가격은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산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가격평정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
2.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확하게 그린 도면
3. 그 밖에 참고가 될 수 있는 매매 사례 등 관계 서류

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률에 따라 산정한 보상액을 해당 재산의 매각가격으로 할 수 있다.

⑦ 법 제12조에 따라 회계 간에 재산을 이관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유재산의 대장가격으로 정할 수 있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의 매매·교환을 신청한 자가 감정평가 실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측량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신청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대금의 납부 및 연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일반 재산의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전액(全額)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점유·사용하는 경우 이자는 매수자가 매각재산을 인도받거나 점유·사용을 시작한 때부터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2. 매각대금을 납부할 자가 재해 등으로 재산에 큰 손실을 입은 경우
3. 한꺼번에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가 영세주민을 위하여 건립한 아파트·연립주택·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매각하는 경우
2. 전원 개발 또는 다목적댐의 건설과 관계되는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납부기간에 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투자사업계획이 승인되기 전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투자사업계획이 승인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자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6.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③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매각대금의 일시 전액 납부기간은 계약체결 후 6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납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을 하여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매각대금의 잔액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42조(일반재산의 매각에 관한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접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일반재산에 대하여 제27조 및 제39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매각기준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기준 중 매각가격을 정할 때에는 인건비, 토지 매입비(보상비를 포함한다)와 그 밖에 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합한 조성원가를 매각가격의 최저한도로 정하여야 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 시설

라.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마. 하천·유수지(遊水池)·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바. 장사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사.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 이전공공기관, 제47조의3에 따른 발전지원센터, 그 밖에 혁신도시 내 입주하는 기업·대학·연구소 등에 대하여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 및 이전공공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의 국유지에 대한 사용허가나 공유지에 대한 사용·수익의 허가 또는 대부(貸付)를 받은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국·공유지를 매입 또는 원상회복하거나 축조한 시설물을 기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국·공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는 해당 국·공유재산의 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율은 해당 국유재산의 임대료의 100분의 100의 범위 안에서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 제28조 또는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다.

- ③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국·공유재산의 관리청에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④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기준 및 요건, 감면을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창출, 혁신도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⑤ 법 제46조에 따라 국·공유재산의 임대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⑥ 삭제

「거창군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거창군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3월 3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조례」
2. **개정이유** :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댐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3조)
 - 1) 현행: 2023년 12월 31일
 - 2) 변경: 2028년 12월 31일
 - 나. 인용 상위법령 제목 변경사항 반영(안 제1조·제2조·제4조)
 - 1) 현행: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2) 변경: 「댐 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4. **의견제출**
 - 가.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건설교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055-940-3529), 이메일(chanung@korea.kr)

라. 제출기한 : 2023. 3. 21.(화) 18:00까지 도달

마. 제출주소 : (우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건설교통과)

바. 문의전화 : 055-940-3533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2. 「거창군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안 1부.

3. 관련법령 1부. 끝.

[붙임 1]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 례 명 : 거창군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의 건	비 고

[붙임 2]

거창군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조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4조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3조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u>」 제44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거창군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u>」 제44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거창군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설치) 거창군수는 「<u>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u>」 제44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지원금, 이월금, 그 밖의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거창군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p>	<p>제2조(설치) 거창군수는 「<u>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u>」 제44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지원금, 이월금, 그 밖의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거창군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p>
<p>제3조(존속기한)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u>2023년 12월 31일</u>까지로 한다.</p>	<p>제3조(존속기한)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u>2028년 12월 31일</u>까지로 한다.</p>
<p>제4조(세출) 특별회계 세출은 「<u>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u>」 제42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에서 확정된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그 밖의 부대경비로 한다.</p>	<p>제4조(세출) 특별회계 세출은 「<u>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u>」 제42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에서 확정된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그 밖의 부대경비로 한다.</p>

[붙임 3]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141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 「댐 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6. 16.] [법률 제18284호, 2021. 6. 15., 일부개정]

제44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 ①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조성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출연금은 제43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대상 댐으로 한정한다. 1. 댐관리청이나 댐사용권자의 출연금 2. 생활용수댐·공업용수댐의 수도사업자의 출연금 3. 차입금 4. 조성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② 댐관리청, 댐사용권자나 생활용수댐·공업용수댐의 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

에 해당하는 비율의 금액을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출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15.>

1. 전전년도 발전판매(發電販賣) 수입금의 100분의 6 이내
 2. 전전년도 생활용수·공업용수 판매량에 전전년도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의 댐용수요금 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22 이내
- ③ 제1항에 따라 조성된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은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가 운영한다. 이 경우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을 별도의 회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법제처 자치법규의견제시 의견 17-0201

질의제목 : 대전광역시의회 -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를 개정
의견 하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경우, 그 개정조례안의 부칙에서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여도 되는지 아니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여야 하는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등 관련)

관련문서 : 대전광역시의회 입법정책실 - 2002(2017.7.20.)

1. 질의요지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를 개정하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경우, 그 개정조례안의 부칙에서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여도 되는지 아니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여야 하는지?

2. 의견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를 개정하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경우, 그 개정조례안의 부칙에서 시행일은 2020년 12월 31일 이전의 날을 선택하여 공포·시행하도록 규정하면 될 것입니다.

3. 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에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이하 “대전시조례”라 함) 제3조에서는 중소기업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을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대전시조례안”이라 함) 제4조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대전시조례안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면서 부칙에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면 기금의 존속기한이 공포한 날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산정되어 5년을 초과하게 되므로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에 관하여 질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조례·규칙의 시행일은 제정·개정된 조례·규칙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에 관한 규정입니다(「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법제처, 2013, p. 201. 참조). 대전시조례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개정을 하면서 부칙에서 그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현행 2020년에서 2025년까지로 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의 효과가 공포한 날부터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시점이 대전시조례안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2025년까지 연장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대전시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까지로 규정하면서, 그 개정조례를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공포·시행한다고 하더라도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하는 것은 그 기금을 설치하고 운용하기 위하여 마련된 조례 전체의 존속기한을 정한 것과 같다고 볼 것이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두도록 한 취지는 기한이 다다를 때까지 기금의 존속기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그 기금 근거의 효력을 잃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법령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이미 해당 규정이 효력을 잃은 것이므로, 비록 형식적으로 규정의 형태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법제처 2017. 5. 18. 의견제시 17-0101 참조), 만약 대전시조례안 부칙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월 1일부터로 시행한다고 규정하게 되면 대전시조례가 사실상 2020년 12월 31일에 효력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효된 법령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이 될 수 있어 적절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대전시조례를 개정하면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경우, 그 개정조례안의 부칙에서 시행일은 2020년 12월 31일 이전의 날을 선택하여 공포·시행하도록 규정하면 될 것입니다.

「거창군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귀농인 지원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3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귀농인 지원조례」

2. 개정 이유

- 거창군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통한 농촌의 지속적인 발전 도모 및 귀농지원 확대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일부 조항을 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제2조(정의) 3항 “ 귀농세대 ” 정의 개정

- 1) 현행 : “귀농세대”란 세대주가 농지원부에 등재된 20세 이상 60세 이하의 귀농인으로서 2명 이상의 세대구성원이 한꺼번에 전입(1명 전입 후 6개월 이내에 1명 이상이 세대편입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지원사업 해당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세대를 말한다.
- 2) 변경 : “귀농세대”란 세대주가 20세 이상 65세 이하의 귀농인으로서 2명 이상의 세대구성원이 한꺼번에 전입(1명 전입 후 6개월 이내에 1명 이상이 세대편입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지원사업 해당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세대를 말한다.

4. 예고기간 : 2023. 3. 3.(금) ~ 3. 21.(화)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행복농촌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등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 주소 : (우 50147)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322, 거창군농업기술센터(행복농촌과)

- 전화번호 : 055) 940-8162 / FAX : 055) 940-8229

6.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농업기술센터 행복농촌과 귀농귀촌담당 **☎(055)940-816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거창군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 개정안 1부. 끝.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거창군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 명(단체명) :
- 생년월일(등록번호) :
- 주 소 :
- 연 락 처 :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입법예고내용	의 건	비 고

거창군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거창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 중 “농지원부에 등재된 20세 이상 60세 이하”를 “20세 이상 65세 이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업”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귀농인”이란 전입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 군 외의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군에 주민등록 전입을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3. “귀농세대”란 세대주가 <u>농지원부에 등재된 20세 이상 60세 이하</u>의 귀농인으로서 2명 이상의 세대구성원이 한꺼번에 전입(1명 전입 후 6개월 이내에 1명 이상이 세대편입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지원사업 해당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세대를 말한다. 4. “지원”이란 귀농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군수가 제공하는 모든 행정적·재정적인 용역과 재화 및 영농기술 등을 말한다.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업”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귀농인”이란 전입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 군 외의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군에 주민등록 전입을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3. “귀농세대”란 세대주가 20세 이상 65세 이하의 귀농인으로서 2명 이상의 세대구성원이 한꺼번에 전입(1명 전입 후 6개월 이내에 1명 이상이 세대편입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지원사업 해당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세대를 말한다. 4. “지원”이란 귀농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군수가 제공하는 모든 행정적·재정적인 용역과 재화 및 영농기술 등을 말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 차. 주민등록 관리
-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

-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 가. 못·늪지·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 다. 농업자재의 관리
-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 바. 농가 부업의 장려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인 농어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귀농어업인·귀촌인 정착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업을 하거나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농어업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업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제13조(지역주민과의 교류 및 협력시책의 추진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 및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류협력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귀농어·귀촌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 프로그램
2. 귀농어업인·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 사업
3. 귀농어업인·귀촌인과 지역주민과 관내·관외 단체 모임 결성 운영 및 연계사업
4. 그 밖에 귀농어업인·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거창군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지역문화진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3월 3일

거창군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지역문화진흥 조례」

2. 개정이유

문화예술기반이 취약한 우리지역 군민에게 널리 영향을 미치는 민간 문화시설의 지원 등을 통해 지역문화활동 거점을 마련하고 군민의 문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법제처 입안원칙에 맞게 정비(안 제1조·제2조, 제6조)

1) 목적 : 위임조례가 아닌 자치조례임을 명확히 함

2) 정의 : 법령의 정의와 동일한 내용의 정의를 두는 경우, 정의하려는 용어가 조례에 한 번만 사용되는 경우의 표현방식에 맞게 정비

나. 지역 문화시설의 확충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추가(안 별표)

1) 문화시설 또는 생활문화시설의 건립·관리 및 사업

2) 지역 문화예술행사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예고기간 : 2023. 3. 3. ~ 3. 2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3. 21.(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다.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하는 곳 : 거창군청 문화관광과

1) 주소 : (우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3층 문화관광과

2) 전화 055)940-3412, 팩스 055)940-3409, 이메일 xunon@korea.kr

7.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055) 940-341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2. 「거창군 지역문화진흥 조례」 개정조례안 1부.

3. 관계법령 1부. 끝.

[붙임 1]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조 례 명 : 거창군 지역문화진흥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붙임 2]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거창군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에 따라 군”을 “이 조례는 거창군”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제6조제4항 중 “지역예술인”을 “지역예술인(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으로 한다.

별표 중 지역 문화시설의 확충 및 활성화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원분야	세부사업내용
지역 문화시설의 확충 및 활성화	○ 문화시설 또는 생활문화시설의 건립·관리 및 사업 ○ 지역 문화예술행사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u>제1조(목적)</u>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에 따라 <u>군</u>의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u>제2조(정의)</u>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문화”란 <u>군</u>을 기반으로 하는 <u>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u> 2. “문화예술단체”란 <u>지역문화를 위한 활동과 사업이 주된 목적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u> 3. “지역예술인”이란 <u>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u> <p><u>제6조(지원사업 등) ①~③ (생략)</u></p> <p>④ <u>군수</u>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u>지역예술인</u>에게 안정적인 예술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범위 등은 <u>군수</u>가 따로 정한다.</p>	<p><u>제1조(목적)</u> 이 조례는 <u>거창군의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u>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u>제2조(정의)</u>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p> <p><u>제6조(지원사업 등) ①~③ (생략)</u></p> <p>④ <u>군수</u>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u>지역예술인(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u>에게 안정적인 예술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범위 등은 <u>군수</u>가 따로 정한다.</p>

관계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다. 「도서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시설

라. 「문학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학관

마.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바.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창작공간으로서 다중이용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공연·전시 등을 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39조(국고보조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
2. 문화예술 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운영
3.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4.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3.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4.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을 말한다.
5. “생활문화시설”이란 생활문화가 직접적·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6. “문화도시”란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7. “문화지구”란 문화시설과 문화업종의 육성, 특성화된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 또는 문화자원과 문화적 특성의 보존을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를 말한다.
8. “지역문화전문인력”이란 지역문화의 기획·개발·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8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 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건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유휴 공간을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활문화시설을 설립·운영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유휴 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⑤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거창군계획시설[공공청사,도로] 사업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 의견청취 공고

경상남도 고시 제2016-73호(2016.03.03.)로 최초 결정고시되고 거창군 고시 제2022-31호,2022-121호로 최종 결정고시된 군계획시설(공공청사,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거창 지원,지청 이전부지 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의 사항을 같은 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분들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3. 8.

거 창 군 수

1. 사업예정지

-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산2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거창군계획시설(공공청사,도로)사업
- 명칭 : 거창 지원,지청 이전부지 조성사업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 면적 : 지원 20,271㎡, 지청 22,593㎡, 도로 : 3,392㎡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거창군수(담당부서: 도시건축과)
- 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5. 사업기간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준공예정일 : 2024년 12월 31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등의 세목조서: 붙임 참조

7. 관계도서 : 거창군청 도시건축과(☎055-940-3593) 비치

8. 열람기간 및 장소

- 기간 : 2023. 3. 8 ~ 3. 23.
- 장소 :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055-940-359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및 그 소유자의 성명·주소

1. 공공청사(거창지원)

일련 번호	소재지 (거창군)	지번	지목	면적(m ²)		소유자		관계인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합계		37필지		20,696	20,271					
1	거창읍 가지리	1345-52	전	332	332	미등기	-	재단법인 경상 남도○○재단	창원시 소담동 ○	토지대장상 소유자
2	거창읍 가지리	1345-55	전	10	10	거창군	-			
3	거창읍 가지리	1345-61	전	72	72	거창군	-			
4	거창읍 가지리	1345-40	전	79	79	거창군	-			
5	거창읍 가지리	1354-25	임	224	224	거창군	-			
6-1	거창읍 가지리	1345-28	전	985	985× 1/2	윤○석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남하제방길 ○			
6-2	거창읍 가지리	1345-28	전	985	985× 1/2	서○여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로 1 66, 102동 ○호(봉덕동, 앞 산힐스테이트)			
7-1	거창읍 가지리	1354-13	임	124	124× 1/2	윤○석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남하제방길 ○			
7-2	거창읍 가지리	1354-13	임	124	124× 1/2	서○여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로 1 66, 102동 ○호(봉덕동, 앞 산힐스테이트)			
8	거창읍 가지리	1354-22	임	1,137	1,137	재단법인 경상남도○○재단	경상남도 창원시 소담동 ○			
9	거창읍 가지리	산103-1	임	992	992	장○수	거창군 거창읍 하동 ○			
10	거창읍 가지리	1343-2	전	248	248	장○수	거창군 거창읍 하동 ○			
11	거창읍 가지리	1345-56	전	50	50	거창군	-			
12	거창읍 가지리	1345-3	전	351	351	재단법인 경상남도○○재단	부산 충무로4가 ○			
13	거창읍 가지리	1297-15	임	164	164	거창군	-			
14	거창읍 가지리	1343-13	전	3,055	3,055	거창군	-			
15	거창읍 가지리	1323-59	전	266	266	거창군	-			
16	거창읍 가지리	산104-1	임	1,006	600	장○덕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 리 428-1 유승베스트빌 ○			
17	거창읍 가지리	1336-9	전	347	340	김○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 로1484번길 21, 105동 ○호 (망포동, 그대가 프미리어)	거창농업 협동조합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14-1	근저당권, 지상권
18-1	거창읍 가지리	산104-12	임	73	73× 1/2	신○갑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8길 13, ○호 (한성사랑채아파트)			
18-2	거창읍 가지리	산104-12	임	73	73× 1/2	변○옥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강변로9길 10, ○호 (한성사랑채아파트)			

일련 번호	소재지 (거창군)	지번	지목	면적(m ²)		소유자		관계인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9-1	거창읍 가지리	1343-7	전	849	849× 1/2	신○갑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8길 13, ○호 (한성사랑채아파트)			
19-2	거창읍 가지리	1343-7	전	849	849× 1/2	변○옥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강변로9길 10, ○호 (한성사랑채아파트)			
20	거창읍 가지리	산104-13	임	1,035	1,035	김○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 로1484번길 21, 105동 ○호 (망포동, 그대가 프미리어)	거창농업 협동조합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14-1	근저당권, 지상권
21	거창읍 가지리	1343-9	전	114	114	김○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 로1484번길 21, 105동 ○호 (망포동, 그대가 프미리어)	거창농업 협동조합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14-1	근저당권, 지상권
22	거창읍 가지리	1336-8	전	532	520	김○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 로1484번길 21, 105동 ○호 (망포동, 그대가 프미리어)	거창농업 협동조합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14-1	근저당권, 지상권
23	거창읍 가지리	1343-3	전	344	344	주식회사 ○○종합건설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 구 용마로 142, ○호(양덕 동, 삼성버킹공상가)	주식회사 경남은행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 원구 3.15대로 642(석전 동) (양덕동금융센터)	근저당권, 지상권
24	거창읍 가지리	1343	전	565	565	이○민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개봉길 58, ○호(공작아파 트)			
25	거창읍 가지리	1343-8	전	238	238	이○민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개봉길 58, ○호(공작아파 트)			
26	거창읍 가지리	1343-10	전	1,363	1,363	주식회사 ○○종합건설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 구 용마로 142, ○호(양덕 동, 삼성버킹공상가)	주식회사경남 은행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 원구 3.15대로 642(석전 동) (양덕동금융센터)	근저당권, 지상권
27	거창읍 가지리	산102-2	임	595	595	주식회사 ○○종합건설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 구 용마로 142, ○호(양덕 동, 삼성버킹공상가)	주식회사경남 은행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 원구 3.15대로 642(석전 동) (양덕동금융센터)	근저당권, 지상권
28	거창읍 가지리	1342-1	과	1,022	1,022	이○민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개봉길 58, ○호(공작아파 트)			
29	거창읍 가지리	산102-7	임	623	623	주식회사 ○○종합건설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 구 용마로 142, ○호(양덕 동, 삼성버킹공상가)	주식회사 경남은행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 원구 3.15대로 642(석전 동) (양덕동금융센터)	근저당권, 지상권
30	거창읍 가지리	1343-11	전	268	268	주식회사 ○○종합건설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 구 용마로 142, ○호(양덕 동, 삼성버킹공상가)	주식회사 경남은행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 원구 3.15대로 642(석전 동) (양덕동금융센터)	근저당권, 지상권
31	거창읍 가지리	산102-8	임	26	26	주식회사 ○○종합건설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 구 용마로 142, ○호(양덕 동, 삼성버킹공상가)	주식회사 경남은행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 원구 3.15대로 642(석전 동) (양덕동금융센터)	근저당권, 지상권
32	거창읍 상림리	410-13	전	1,242	1,242	유○렬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상동 ○	이○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상탑로 111(서둔동)	근저당권
33	거창읍 상림리	410-16	전	1,790	1,790	장○수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하동 ○			
34	거창읍 상림리	410-14	전	470	470	최○정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창남1길 40, 105동 ○호 (김천주공아파트)			
35	거창읍 상림리	753-1	도	15	15	국(국토교통부)	-			
36	거창읍 상림리	410-9	전	50	50	최○정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창남1길 40, 105동 ○호 (김천주공아파트)			
37	거창읍 상림리	410-17	전	40	40	박○수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남산리 ○	거창사과원예 농업협동조합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김천리 255	근저당권, 지상권

2. 공공청사(거창지청)

일련 번호	소재지 (거창군)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합계		48필지		22,593	22,593					
1	거창읍 가지리	1354-27	임	3	3	거창군	-			
2	거창읍 가지리	1354-1	임	449	449	재단법인 경상남도 ○○재단	경상남도 창원시 소담동 ○			
3	거창읍 가지리	1345-14	전	193	193	재단법인 경상남도 ○○재단	부산 흥무로4가 ○			
4	거창읍 가지리	1345-13	전	167	167	재단법인 경상남도 ○○재단	경상남도 창원시 소담동 ○			
5	거창읍 가지리	1345-57	전	32	32	거창군	-			
6	거창읍 가지리	1345-43	전	46	46	거창군	-			
7	거창읍 가지리	1345-49	전	10	10	거창군	-			
8	거창읍 가지리	1345-44	전	848	848	거창군	-			
9	거창읍 가지리	1354-26	임	21	21	거창군	-			
10	거창읍 가지리	1354-23	임	3,447	3,447	거창군	-			
11	거창읍 가지리	1354-24	임	8	8	거창군	-			
12	거창읍 가지리	1345-45	전	3,092	3,092	거창군	-			
13	거창읍 가지리	1345-58	전	60	60	거창군	-			
14	거창읍 가지리	1345-22	전	55	55	거창군	-			
15	거창읍 가지리	1345-23	전	75	75	거창군	-			
16	거창읍 가지리	1345-59	전	25	25	거창군	-			
17	거창읍 가지리	1354-17	임	85	85	거창군	-			
18	거창읍 가지리	1354-21	임	11	11	거창군	-			
19	거창읍 가지리	1345-48	전	1	1	거창군	-			
20	거창읍 가지리	1345-47	전	154	154	거창군	-			
21	거창읍 가지리	1345-46	전	153	153	박○자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			
22	거창읍 가지리	1345-50	전	28	28	거창군	-			
23	거창읍 가지리	1345-60	전	2	2	거창군	-			
24	거창읍 가지리	1345-26	전	23	23	거창군	-			
25	거창읍 가지리	1345-25	전	55	55	박○자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			
26	거창읍 가지리	1345-24	전	114	114	재단법인 경상남도 ○○재단	경상남도 창원시 소담동 ○			
27	거창읍 가지리	1354-29	임	55	55	미등기	-	재단법인 경상 남도 ○○재단	경상남도 창원시 소담동 ○	토지대장상 소유자
28	거창읍 상림리	410-4	전	169	169	장○수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하동 ○			
29-1	거창읍 상림리	412-4	전	105	105× 1/2	박○호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반림 동 4-1 현대아파트 ○			
29-2	거창읍 상림리	412-4	전	105	105× 1/2	김○선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 지리 403-2 동원그린빌 ○			

일련 번호	소재지 (거창군)	지번	지목	면적(m ²)		소유자		관계인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30	거창읍 상림리	410-19	전	107	107	박○수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남산리 ○	거창사과원예 농업협동조합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김천리 255	근저당권, 지상권
31	거창읍 상림리	410-8	전	261	261	거창군	-			
32	거창읍 상림리	410-22	전	632	632	거창군	-			
33-1	거창읍 상림리	412-11	전	5,812	5,812× 1/4	박○호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반림 동 4-1 현대아파트 ○			
33-2	거창읍 상림리	412-11	전	5,812	5,812× 1/4	김○선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 리 403-2 동원그린빌 ○			
33-3	거창읍 상림리	412-11	전	5,812	5,812× 2/4	거창군	-			
34-1	거창읍 상림리	산19-4	임	32	32× 1/2	박○호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반림 동 4-1 현대아파트 ○			
34-2	거창읍 상림리	산19-4	임	32	32× 1/2	김○선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 리 403-2 동원그린빌 ○			
35	거창읍 상림리	412-16	전	1,250	1,250	거창군	-			
36	거창읍 상림리	산21-10	임	365	365	거창군	-			
37	거창읍 상림리	산23	임	298	298	미등기	-	이○○무	송정리	토지대장상 소유자
38	거창읍 상림리	산22	임	99	99	미등기	-	이○○무	송정리	토지대장상 소유자
39	거창읍 상림리	산21-9	임	1,193	1,193	거창군	-			
40	거창읍 상림리	412-13	전	516	516	김○수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상동7 길 46, 비동 ○호 (영창빌라)	북부농업 협동조합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당대고개길 6 (웅양지점)	근저당권
41	거창읍 상림리	412-12	전	4	4	김○수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상동7 길 46, 비동 ○호 (영창빌라)	북부농업 협동조합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당대고개길 6 (웅양지점)	근저당권
42	거창읍 상림리	산21-11	임	1,307	1,307	거창군	-			
43	거창읍 상림리	412-14	전	116	116	거창군	-			
44	거창읍 상림리	산25-10	임	48	48	거창군	-			
45	거창읍 상림리	산25-11	임	878	878	거창군	-			
46	거창읍 상림리	703-10	전	33	33	거창군	-			
47	거창읍 상림리	702-7	전	151	151	거창군	-			
48	거창읍 상림리	702-8	전	5	5	거창군	-			

3. 도로(중로2-48호선)

일련 번호	소재지 (거창군)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합 계		13필지		3,798	3,392					
1	거창읍 가지리	1345-62	전	3	3	거창군	-			
2	거창읍 가지리	1345-39	전	245	128	거창군	-			
3	거창읍 가지리	1345-54	전	72	72	거창군	-			
4	거창읍 가지리	1345-53	전	73	73	미등기	-	박○자	1349	토지대장상 소유자
5	거창읍 가지리	1345-51	전	591	591	미등기	-	재단법인경상 남도○○재단	창원시 소담동 ○	토지대장상 소유자
6	거창읍 가지리	1354-28	임	288	288	미등기	-	재단법인경상 남도○○재단	창원시 소담동 ○	토지대장상 소유자
7	거창읍 상림리	410-15	전	936	936	장○수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하동 ○			
8-1	거창읍 상림리	412-15	전	56	56× 1/2	박○호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반림동 4-1 현대아파트 ○			
8-2	거창읍 상림리	412-15	전	56	56× 1/2	김○선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403-2 동원그린빌 ○			
9	거창읍 상림리	410-18	전	819	819	박○수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남산리 ○	거창사과원에 농업협동조합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김천리 255	근저당권, 지상권
10	거창읍 상림리	410-10	전	15	15	최○정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창남1길 40, 105동 ○호 (김천주공아파트)			
11	거창읍 상림리	410-21	전	7	7	오○옥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			
12-1	거창읍 상림리	412-17	전	19	19× 1/2	박○호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반림동 4-1 현대아파트 ○			
12-2	거창읍 상림리	412-17	전	19	19× 1/2	김○선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403-2 동원그린빌 ○			
13-1	거창읍 상림리	411-4	전	674	385× 1/25	양○용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1-65 송도힐스테이트 ○			
13-2	거창읍 상림리	411-4	전	674	385× 3/50	양○용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 대로130번길 80, 107동 ○호 (송도동, 송도푸르지오하버뷰)			
13-3	거창읍 상림리	411-4	전	674	385× 45/50	주식회사 ○○주민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 대로11길 36, ○호 (양재동, 서울오토갤러리)			

의견서

1. 제목		거창 지원, 지청 이전부지 조성사업
2.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3. 의견		
4. 기타		
<p>「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3항 및 제11조5항에 의거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p> <p>2023. . . .</p> <p>의견제출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p> <p>거창군수 귀하</p>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거창군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거창군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3월 2일

거창군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

2. 개정이유

- 외식업소 육성을 위한 행정·재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외식 및 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3. 주요내용

-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목적 (안 제1조)
- 외식업소 지원계획 수립·시행 (안 제4조)
- 외식업소 육성사업 지원범위 (안 제5조)
- 외식업소 지원대상 (안 제6조)
- 대표음식, 대표음식점 선정 지정 (안 제8조)
- 외식업소 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안 제9조)

4. 제정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23. 3. 2. ~ 2023. 3. 21.

6.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3년 3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농업기술센터 행복농촌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다. 주소 : (우50147)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322, 거창군농업기술센터 행복농촌과
라. 전화 055-940-8293, 팩스 055-940-8229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2. 거창군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 1부. 끝.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 례 명 : 거창군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의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외식 및 관광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의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영업,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을 말한다.
2. “대표음식”이란 여론조사 등을 거쳐 거창군(이하 “군”라 한다)에서 지정한 음식을 말한다.
3. “대표음식점”이란 대표음식을 판매하는 외식업소로서 군에서 지정한 대표음식을 판매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외식업소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외식업소 지원계획)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거창군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의 기본방향과 세부전략
2. 대표음식점 등의 관광상품화 등 활성화 방안
3. 그 밖에 외식업소 육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현장 컨설팅 및 홍보
2. 식품안전강화를 위한 위생물품 지원
3. 음식점 내·외부 환경 및 시설 개선 사업

4. 방역, 방충 등 위생관리
5. 대표 음식점 지정
6. 대표음식 개발, 보급 및 육성
7. 음식 관련 축제 개최
8. 대표음식 광고, 안내책자, SNS 등 홍보에 관한 사업
9. 우수외식문화 탐방·체험
10. 그 밖에 외식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대상)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식업소 및 관련단체로 한다.

1. 모범업소
2. 대표음식점
3. 대표음식 개발을 위한 시책사업에 참여하는 외식업소
4. 그 밖에 군의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환경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및 단체

제7조(중복 지원 제한) 제5조에 따른 지원과 같은 종류의 지원을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이미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제8조(대표음식 등 선정) ①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외식 및 관광산업 발전을 위하여 대표음식, 대표음식점, 맛집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정을 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을 해야한다.

③ 대표음식, 대표음식점 선정 기준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외식업소 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외식업소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대표음식·대표음식점 선정 및 선정취소
2. 대표음식의 평가 및 요리경연대회
3. 대표음식의 관광 상품화 등에 관한 사항

4. 외식업소 육성 정책개발 등에 관한 자문
5.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행복농촌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외식, 위생, 관광, 시장 등 관련 업무 부서의 과장
2.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외식 관련 대학교수
4. 외식업소 관련 단체 임직원
5. 관광 및 식품 관련 전문가
6. 그 밖에 외식분야에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지역 먹거리 담당주사가 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심의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명칭사용의 금지) 대표음식점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는 대표음식점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사후관리 등)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대표음식점에 대표음식과 관련하여 보고를 받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된 서류 또는 장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대표음식점으로 선정된 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없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대표음식으로 지정된 음식을 조리·판매하지 않는 경우
2.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 「외식산업진흥법」

[시행 2021. 2. 19.] [법률 제17037호, 2020. 2. 18., 타법개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식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